

신구조문대비표  
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

<b>아동복지법 시행령</b> [대통령령 제25751호, 2014.11.19., 타법개정]	<b>아동복지법 시행령</b> [대통령령 제26578호, 2015.10.6., 일부개정]
<p><b>제25조(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)</b>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피해아동,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고,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</li> <li>2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의 열람 및 발급</li> <li>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</li> <li>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</li> </ol>	<p>&lt;삭 제&gt;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26조(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)</b>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</li> <li>2.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</li> <li>3. 피해아동 보호 절차</li> </ol> <p>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.</p> <p>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</li> <li>2.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</li> </ol> <p>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,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</p>
<p><b>제56조(권한의 위임)</b> ① (생략)</p> <p>② 시·도지사는 법 제68조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</p>	<p><b>제56조(권한의 위임)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 본문에 따라 다음 각</p>

<p>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권한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</p> <p>2. 법 제2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피해아동,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의 입력</p> <p>3. 법 제2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등의 점검·확인</p> <p>4.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</p> <p>③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8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교육감·교육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</p> <p>2.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등의 점검·확인</p> <p>3.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</p> <p>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법 제29조의4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등의 점검·확인</p> <p>2.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</p> <p>⑤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68조 단서에 따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권한을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⑥ 시·도지사는 법 제68조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권한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</p>
<p><b>제57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</b>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12. ~ 16. (생략)</p>	<p><b>제57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</b> ①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의2. 법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지원에 관한 사무</p> <p>12. ~ 16. (현행과 같음)</p>

<p>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1.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: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피해아동의 보호·치료 등의 사무</p> <p>1의2. ~ 5. (생략)</p>	<p>②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1. - - - - - 제22조의2 에 따른 - - - - -</p> <p>-</p> <p>1의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